

「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」 모집 공고

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에 대비하여 한옥 건축산업 선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「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」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I. 지원 대상

「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」에 선정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
「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」

II. 사업 개요

1. 사업목적

- (한옥설계 전문인력) 한옥설계 실무 적용이 가능한 전통한옥 및 신한옥 디자인, 설계과정 교육과 소양교육을 위한 한옥체험, 현장 실습 등 다양한 교육으로 한옥설계 능력 배양
- (한옥시공 관리자)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, 자재수량 산출 및 발주 등의 교육도 포함하여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배양

2. 사업 내용

1) 과정명 :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

□ 사업개요

○ 총사업비 : 120백만원

- '24년 선정기관 : 120백만원 (1개 기관)

※ '23년 우수기관이 '24년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

* 교육생 참여교육비 징수 가능(30만원/1인) : 봉사활동, 답사, 워크숍 등 현장 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

○ 선정 대상 사업기관

- 한옥설계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한 1개 기관 선정

* 교육기관 선정 시 교육기획 형평성 등을 고려, 지역별 안배할 수 있음

- 선정된 사업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가능

* 현장학습·실습 등의 교육계획 수립, 관리·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연계하는 방안 등

○ 교육 대상 및 기준 등

- 건축사, 건축사사무소 종사자, 건축분야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
기관별 40명 내외 교육

* 교육희망자 중 위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원 외로 관리

- 재선정 교육기관('22년, '23년 선정)은 심화반 운영 의무, 신규
교육기관은 여건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심화과정을 별도
개설 가능(총 교육생수 내에서 인원배분)

* 심화과정 선발인원 : 교육인원의 30% 내외

- 주당 8시간 이상 총 160시간 이상 교육
 - * 일반교육(주당 8시간 19주)+봉사활동 교육(8시간 1주)
 - 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(기초과정 교육 중 현장학습, 답사, 봉사활동 등 동시편성 가능)
- 실무위주 교육 편성, 한옥 R&D 신기술 교육 편성, 현장학습(한옥 R&D 실증 한옥 포함) 시행
- 편성비율 : 이론 20% 미만, 실습(현장학습(실측,답사),설계,치목 등) 75% 이상, 봉사활동 5% 이상

○ 교육성과 홍보

- 관계기관 홍보를 위해 교육 성과물(기존 우수 실적 포함)의 제본·배부(전자책 가능) 및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자료로 제공

2) 과정명 :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

□ 사업개요

○ 총사업비 : 120백만원 (1개 기관)

※ '23년 우수기관이 '24년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

- * 교육생 참여교육비 징수 가능(30만원/1인) : 봉사활동, 답사, 워크숍 등 현장 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

○ 선정 대상 사업기관

-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한 1개 기관 선정
- 공정관리 및 시공 등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

○ 교육 대상 및 교육 최소 기준

- 건축사, 건축분야 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, 한옥교육(3개월 이상)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40명 내외 교육
- 재선정 교육기관('22년, '23년 선정)은 심화반 운영 의무, 신규 교육기관은 여건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심화과정을 별도 개설 가능(총 교육생수 내에서 인원배분)
 - * 심화과정 선발인원 : 교육인원의 30% 내외
- 주당 8시간 이상 총 160시간 이상 교육
 - * 일반교육(주당8시간 19주)+봉사활동 교육(8시간 1주)
 - 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(기초과정 교육 중 현장학습, 답사, 봉사활동 등 동시편성 가능)
- 실무위주 교육 편성, 한옥 R&D 신기술 교육 편성 및 실증한옥 답사, 한옥건축 단계별로 현장교육 시행
- 편성비율 : 이론 20% 미만, 실습(현장교육,수량산출,답사,실측 등) 75% 이상, 봉사활동 5% 이상

Ⅲ. 공통사항

○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 편성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, 교육인원 및 시간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
- 교육편성 비율은 필요 시(양질의 교육 실현, 프로그램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) 10%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 단,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발표 시 필요성에 대해 설명

- 인문학 교육은 지양하고,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, 실습과 바로 연결되는 이론 강의*는 실습으로 간주

* 실습에 앞서 기초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

○ 교육이수 기준

- 편성된 교육시간의 80% 이상 참석
- 교육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소를 이탈할 경우 교육기관은 사유서를 징구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 미 참석으로 간주, 인정 시 수강 시간만큼 교육이수로 간주

○ 교육우수자 중 시상

- 한옥교육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여*

* 기관별 1명, 대상자 선정위원으로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의무 위촉 (미 위촉 시 장관상 수여 불가)

○ 성과평가

- 추진 기관별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다음연도 사업 계획 수립시 활용

○ 기타

- 교육기관은 과정별* 복수지원 가능하며, 제안서는 과정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

*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,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

IV.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

○ 추진절차

① 사업제안서 접수 → ② 사업제안서 평가 → ③ 선정위원회 심사 및 사업기관 선정 → ④ 사업기관 지정 → ⑤ 교육수행 및 사업관리 → ⑥ 교육평가 및 사후관리

○ 사업기관의 선정

- 사업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사업자를 통해 선정 후 사업기관 지정 통보
- * 교육시설, 행정인력과 건축관련 교육기능을 갖춘 대학·학회·협회·교육원·연구기관 또는 법인
- *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연계(전문과정별 분담이행이나 시설·조직보완을 위한 공동이행)도 가능

○ 사업기관 관리

- 교육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한옥센터에서 모니터링 추진
- * 사업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기관(국가한옥센터 등)에서 자료요구 및 현장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** 주기적 모니터링·회의 등을 시행하여 모니터링 의견을 교육내용에 반영 조치
- 사업기관은 자체 운영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교육실태 관리

V. 평가기준

- 평가지표별로 평가(가점포함 110점 만점)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기관 선정

평가영역	평가지표	배점
사업수행 역량 (45)	• 재무적 안정성(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)	5
	•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- 사업수행 기반구축(전문·행정인력, 교육시설 및 장비 등 포함) 현황	15
	• 최근 5년간 한옥관련 연구과제, 교육 프로그램, 보조금사업 수행현황	10
	•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자체 예산확보 능력 등	15
사업내용 (40)	• 사업목표,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	15
	• 교육대상 선정계획, 교육생 관리 방안,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	25
성과관리 (10)	• 홈페이지 활용 및 홍보전략 • 사업성과 활용방안,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등	10
기타 (5)	• 타기관과의 차별성이 있는 교육과정, 교육생 선발기준 등	5
가점 (10)	• '2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	5
	• 산업체·학교·연구소·지자체 등과의 교육연계방안	3
	• 한옥교육 활성화 계획	2

VI. 신청방법

○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(제안서) 7부

※ 제안 발표자료(PPT 등)는 평가 3일전 까지 제출(추후 통보)

○ 제출기한 : 2024. 4. 25.(목), 18:00까지

○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우편 제출

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4월 25일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※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(pro1004s@korea.kr)로 제출 [원본 파일 1개, 저용량 (8MB 이하) 파일 1개]

○ 제출처 :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-2동 418호)

○ 문의처 :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(☎ 044-201-3783)

VII.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 하거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만 통보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

【별첨】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안서 작성안내 1부.